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육영, 정병기, 이용진, 박영섭,
김경이, 오중균, 정기혁, 임태근,
정윤주, 양순임, 이관우, 정해숙,
진선아, 경수현, 강수진, 권영애,
이인순, 고영옥, 소형준, 이호건,
이일준, 임현주

1. 제안이유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다문화가족지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안 제13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기간 변경(안 제17조)

마.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3. 9. 26. ~ 2023.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4조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제13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의 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로 지정하고”를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정한”을 “설치·운영한”으로,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대여할 수”를 “수”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u>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u>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u></p> <p>2. (생략)</p> <p>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u>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사업)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u></p>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공 사업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

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

험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10.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

1.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

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등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서울특별시 -----

-----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② ----- 5년 -----

제19조(비용의 보조) ----- 설치·운영한 -----

----- 수 -----

제22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공자·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① --- 다문화가족

-----.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삭 제>